

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2-478호(2022.12.30~2024.12.29)



iM뱅크 퀵 서비스 설명서

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 계약은 (iM뱅크 퀵 서비스 이용약관)이 적용됩니다.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,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.

1 개요 및 특징

- <u>iM뱅크</u> 퀵 서비스는 지정 단말기에서 보안영역용 인증서를 발급받아 간편비밀번호 등 은행이 허용하는 수단으로 간단히 로그인하여 거래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서비스의 종류
- 「퀵 로그인」은 이용자가 간편비밀번호 등 은행이 허용하는 수단을 통해 로그인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「퀵 이체」는 계좌비밀번호와 일회용 비밀번호 입력없이 간편비밀번호 등 은행이 허용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출금 계좌에서 출금한 후 수취인의 계좌번호로 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「퀵 청구」는 이용자가 회비나 물품대금수납 등을 목적으로 청구사유와 청구금액 등을 입력한 후 피 청구인의 이동통신단말기로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「퀵 납부」는 이용자가 피청구인으로서 「퀵 청구」를 통해 요청받은 금액을 청구인이 지정한 계좌번 호로 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이체한도
- 「퀵 이체」와 「퀵 납부」의 이체한도는 합산하여 은행에서 별도 정한 1일 이체한도 범위 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이체가 가능합니다.
- 「퀵 청구」는 청구인이 1일 최대 300만원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단, 피청구인별 1회 최대 50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「퀵 이체」및「퀵 납부」의 이체한도는 은행에 가입된 기존 전자금융 이체한도에 포함됩니다.

2 수수료에 관한 사항

○「퀵 이체」이용수수료는 <별표 1>에 따르며「퀵 청구」와「퀵 납부」이용수수료는 무료입니다.

3 서비스해지에 관한 사항

○ 서비스 해지는 지정 단말기 또는 다른 이동통신단말기에서 은행이 지정한 앱을 통하거나 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.

4 거래제한에 관한 사항

-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**간편비밀번호를 5회 연속하여 잘못 입력**한 경우
- **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**하는 경우



- 은행에 등록된 지정 단말기 정보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
- 법적 지급제한,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
- 은행은 청구인이 청구일 포함 최근 1주일 이내 피청구인으로부터 일정 횟수 이상 청구차단을 당한 경우 은행에서 정한 기간 이내「퀵 청구」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5 은행이용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

- 서비스 출금계좌는 별도 등록 절차 없이 인터넷뱅킹 출금계좌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제공되는 서비스는 계좌비밀번호와 일회용 비밀번호 없이 거래가 가능하나 은행은 보안상의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「퀵 청구」로 청구되어 청구일 포함 3일 이내 피청구인이 「퀵 납부」를 통해 청구인의 계좌번호로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청구내역은 자동 취소됩니다.

6 기타 계약의 주요내용

- 이용시간 : 연중 무휴, 1일 24시간(단, 운영상의 필요로 은행이 정한 기간 동안 서비스 일시 중지 가능)
-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-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- 이 설명서는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작성되었습니다.

<별표 1> 전자금융 이용수수료

수수료 구분	인터넷뱅킹, 폰뱅킹 서비스	스마트뱅크 서비스
타행간 자금이체	500원	500원
당행간 자금이체	면제	면제

※ 무통장식 거래고객이 인터넷뱅킹(대량지급이체 제외), 모바일앱뱅킹으로 타행간 자금이체시 수수료는 건당 300원으로 함

서비스 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(민원)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(1588-5050, 1566-505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imbank.co.kr)에 문의할 수 있고,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